2020. 3. 3.(화)

강원도의회 제287회 임시회
입법 · 정책 동향

◇ 제287회 임시회(2. 11. ~ 2. 20.) 시 강원도의회에서 의결된 조례안 목록과 의원발의 조례안(15건) 주요내용을 소개드림

◇ 의안 및 심사보고서 등 보다 자세한 사항은 강원도의회 의안처리시스템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강원도의회 의안처리시스템 : http://billgangwon16.council.or.kr:8080

섬기는 일하는 가까운 강원도의회 입법정책담당관실

제287회 임시회 의안(조례안) 처리 목록

❖ 조례안 : 26건(도지사 6, 교육감 4, 위원회 1, 의원 15 * 제안자 구분)

위원회	의안(조례안)	대표발의자	본회의 처리결과 (2020. 2. 20.)
운영위원회 (1)	강원도의회의원 연구회 지원 조례안	운영위원장	원안
기획행정위원회 (4)	강원도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정수진 의원	수정
	강원도 소방시설 등에 대한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상규 의원	
	강원도 사회재난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	도지사	원안
	강원도 사무위임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사회문화위원회 (6)	강원도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심영미 의원	원안
	강원도 고령친화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윤석훈 의원	
	강원도 국제문화교류 진흥 조례안	김병석 의원	
	강원도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 조례안	정수진 의원	수정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기념관 관리 및 운영 조례안	도지사	원안
	강원도 재단법인2018 평창 기념재단 지원에 관한 조례안		수정
농림수산위원회 (4)	강원도 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 지원조례안	신도현 의원	원안
	강원도 농어업인 수당지원 조례안	도지사	수정
	강원도 어업인 대상 조례안	위호진 의원	
	강원도 자동차공회전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권순성 의원	원안

위원회	의안(조례안)	대표발의자	본회의 처리결과 (2020. 2. 20.)
경제건설 위원회 (4)	강원도 주차장설치 지원 조례안	조성호 의원	원안
	강원도 노동기본조례안	허소영 의원	수정
	강원도 청년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조형연 의원	수정
	강원도 일자리재단설립 및 운영 조례안	도지사	수정
교육 위원회 (7)	강원도교육청 국어 바르게 쓰기 조례안	윤석훈 의원	원안
	강원도교육청 교육·학예에 관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허소영 의원	수정
	강원도교육청 초등학생 생존수영교육 지원 조례안	심영미 의원	원안
	강원도교육청 지방공무원 적극행정운영 조례안	교육감	수정
	강원도 학교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안		원안
	강원도 도립학교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원도교육청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 지역 및 기관과 등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참고 : 조례 제정절차 등 》

○ (지방자치단체 이송) : 지방의회에서 의결된 날부터 5일 이내 이송
  * 제287회 임시회 조례안 의결사항 집행기관 이송일 : 2020. 2. 21.(금)
○ (지방자치단체장 조례안 공포) : 이송받은 날부터 20일 이내 공포
○ (지방자치단체장 재의 요구) : 이의가 있으면 20일 이내 지방의회로 환부
○ (재의요구 조례안 확정) : 지방의회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이상 찬성
○ (조례 효력발생) : 공포한 날부터 20일 후 효력 발생
※ 관련법규 :「지방지치법」 제26조

제287회 임시회 의원발의 조례안 내용소개

▣ 강원도 한국전쟁 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 대표발의: 정수진 의원(농림수산위원회·더불어민주당·비례)
▪ 공동발의: 박인균 의원(경제건설위원회·더불어민주당·강릉2)

정수진 의원

박인균 의원

한국전쟁 전후 도내 민간인 희생자를 추모함으로써, 평화와 인권회복에 기여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조례안을 발의하였다. 조례안에서 “민간인 희생자” 란, 진실화해위원회 등 국가기관의 진상조사 또는 사법부의 판단으로 무고한 희생이 인정된 사람을 말하며 “위령사업” 이란 민간인이 희생자를 위한 추모행사 유해안치, 위령시설 조성 등의 사업을 말한다. 진실화해위원회 등 국가기관이 지방자치단체에 권고한 사항에 대한 이행조치와 사법부의 판단으로 인정된 민간인희생자가 강원도에 위의 권고사항에 준하여 요구하는 사항 등을 지원기준으로 민간인 희생자와 관련된 자료의 발굴 및 수집, 간행물 발간, 평화인권을 위한 교육사업 등을 지원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이러한 지원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시·군 및 기관이나 단체에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 강원도 소방시설 등에 대한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대표발의: 남상규 의원(기획행정위원회·더불어민주당·춘천4)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및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위반행위를 신고하는 사람에 대한 포상금 지급을 규정하고 있는 「강원도 소방시설 등에 대한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에 관한 조례」의 일부개정안을 발의하였다. 조례안은 강원도 소방시설 등에 대한 불법행위 신고 대상을 확대하고, 불법행위의 내용을 명확히 하여 화재시 불법행위로 인한 인명피해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확대된 신고대상의 범위는 비상구를 포함한 주출입구에 장애물 등으로 피난을 방치하는 행위, 소방펌프를 비롯한 소방시설을 고장난 상태로 방치하는 행위 등이다. 또한 불법행위 신고로 포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대상 시설을 문화 및 집회시설, 판매시설(대형마트, 전문점, 백화점, 쇼핑센터, 복합쇼핑몰 등), 운수시설, 숙박시설, 의료시설, 위락시설, 노유자 시설, 복합건축물의 8개 항목으로 규정하였고, 포상금의 한도를 월간 70만원과 연간 350만원으로 상향하였다.

▣ 강원도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 대표발의: 심영미 의원(사회문화위원회·미래통합당·비례)

「장애인 · 노인 ·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함)에 따른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의 취득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장애인 · 노인 ·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조례안을 발의하였다.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이란 보건복지부장관과 국토교통부장관이 장애인등이 대상시설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편의시설의 설치 · 운영을 유도하기 위하여 대상시설에 대하여 인증하는 것을 말한다.

법에서 규정한 장애인 등에게 편의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대상 시설은 제1종 근린생활 시설, 제2종 근린생활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 의료시설, 운동시설, 업무시설, 숙박시설, 공장, 자동차 관련 시설, 방송통신시설, 교정시설, 묘지 관련 시설, 관광 휴게시설, 장례식장이다. 조례안은 법이 정하는 대상시설 중에 강원도가 건축주인 건축물, 강원도가 위탁 · 운영하는 건축물, 비영리 민간단체,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건축물에 대하여 인증취득을 원하는 신청자에게 인증수수료 등을 예산이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한 강원도지사가 매년 인증 건축물에 대하여 도 홈페이지에 게시하며 인증시설물에 대한 관리를 위해 민간 모니터링단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 강원도 고령친화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 대표발의: 윤석훈 의원(교육위원회·더불어민주당·평창1)
■ 공동발의: 장덕수 의원(사회문화위원회·더불어민주당·정선1)
윤지영 의원(사회문화위원회·더불어민주당·춘천1)

고령사회로 진입한 강원도의 고령친화산업을 육성 · 지원하고, 그 발전기반을 조성하여 고령자의 삶의 질 향상과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 조례안을 발의하였다. “고령친화산업”이란 「고령친화산업 진흥법」에 따른 고령친화제품 등을 연구 · 개발 · 제조 · 건축 · 제공 · 유통 또는 판매하는 업종을 말하는 것으로 조례안에서는 강원도지사가 고령친화산업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 · 시행 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고령친화산업의 분야별 발전시책, 기반조성, 재원 확보 및 배분 등의 고령친화산업발전계획 기본 계획을 강원도 저출산 · 고령사회 연도별 시행계획에 포함시키도록 하고 있다.

윤석훈 의원

장덕수 의원

윤지영 의원

▣ 강원도 국제문화교류 진흥 조례안

■ 대표발의: 김병석 의원(사회문화위원회·더불어민주당·원주4)
■ 공동발의: 심영섭 의원(사회문화위원장·미래통합당·강릉1)
장덕수 의원(사회문화위원회·더불어민주당·정선1)
최종희 의원(교육위원회·미래통합당·비례)

「국제문화교류 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구체적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제문화교류를 위한 기반을 조성하고, 다른 국가와의 상호 문화 교류 증진을 통해 강원도 문화 진흥을 도모하기 위해 조례안을 발의하였다. 조례안은 도지사가 국제문화교류 진흥을 위한 시책을 수립 · 시행하고, 강원도 국제문화교류 진흥계획을 매년 수립 · 시행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국제문화교류 진흥에 관한 협의를 위하여 강원도 국제문화교류협의회를 둘 수 있도록 하고, 비영리 단체나 법인이 국제문화교류진흥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 또는 시설에 드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김병석 의원 심영섭 의원 장덕수 의원 최종희 의원

▣ 강원도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 조례안

■ 대표발의: 정수진 의원(농림수산위원회·더불어민주당·비례)
■ 공동발의: 반태연 의원(사회문화위원회·더불어민주당·강릉3)
박인균 의원(경제건설위원회·더불어민주당·강릉2)

강원도 이스포츠(전자스포츠)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강원도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 조례안’을 발의하였다. 조례안에서 “이스포츠”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따른 게임물을 매개(媒介)로 하여 사람과 사람 간에 기록 또는 승부를 겨루는 경기 및 부대활동을 말하고, “이스포츠산업”이란 이와 관련된 재화와 서비스를 통하여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산업을 말한다. 조례안은 이스포츠 진흥의 기본방향 및 목표, 정책 및 시책 개발, 진흥을 위한 추진 사업, 지원을 위한 재원 확보 등의 내용을 포함한 강원도 이스포츠 진흥을 위한 계획을 수립 · 시행 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이스포츠 대회개최 및 선수교류 등을 위한 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정수진 의원 반태연 의원 박인균 의원

▣ 강원도 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 지원 조례안

■ 대표발의: 신도현 의원(농림수산위원회·미래통합당·홍천2)
■ 공동발의: 심영미 의원(사회문화위원회·미래통합당·비례)
최재연 의원(농림수산위원회·미래통합당·철원1)

「동물보호법」에 따른 동물복지축산농장의 인증의 취득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우수축산물 생산과 환경 친화적 축산업을 발전시키고 동물복지 증진 및 사육환경 개선에 기여하기 위해 조례안을 발의하였다. 조례안은 도지사가 동물복지축산에 관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장·군수 및 축산농가 등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는 등 동물복지축산을 진흥시키기 위하여 노력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도지사가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인증된 동물복지축산농장에 대하여 도 홈페이지에 게시할 것과 인증농장의 유지를 위하여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농장의 운영실태를 조사하게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신도현 의원

심영미 의원

최재연 의원

▣ 강원도 어업인대상 조례안

■ 대표발의: 위호진 의원(사회문화위원회·더불어민주당·강릉4)
■ 공동발의: 권순성 의원(사회문화위원회·더불어민주당·원주6)
신명순 의원(농림수산위원회·더불어민주당·영월2)
이병헌 의원(교육위원회·더불어민주당·원주2)
정수진 의원(농림수산위원회·더불어민주당·비례)

수산업 육성과 어촌마을 활성화에 기여한 어업 종사자 및 단체를 발굴하여 시상함으로써 어업인의 사기진작과 자긍심을 고취하는데 기여하기 위해 조례안을 발의하였다. 어업인대상 시상 부문을 어업소득, 어업진흥, 어촌관광 활성화 부문으로 나누고 시상자의 자격을 강원도 내에 주민등록 또는 법인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로 거주하면서 3년 이상 어업 발전을 위하여 기여한 수산업동조합, 어업인, 어업법인, 어촌계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수상후보자 추천은 시장·군수 또는 도 단위 수산관련 단체장으로 하되, 필요에 따라 도지사가 따로 기관·단체장을 추가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위호진 의원

권순성 의원

신명순 의원

이병헌 의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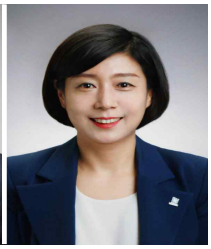
정수진 의원

▣ 강원도 자동차 공회전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대표발의: 권순성 의원(사회문화위원회·더불어민주당·원주6)
- 공동발의: 김경식 의원(기획행정위원회·더불어민주당·영월1)
  김진석 의원(농림수산위원회·더불어민주당·평창2)
  조성호 의원(경제건설위원회·더불어민주당·원주7)

「대기환경보전법」의 규정에 따라 터미널 · 차고지 · 주차장 등의 장소에서 자동차의 공회전을 제한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강원도 자동차 공회전 제한에 관한 조례」의 일부개정안을 발의하였다. 자동차 공회전 제한 지역은 터미널, 차고지, 주차장, 자동차극장, 시내 · 마을버스 회차지, 백화점 · 관광호텔 · 종합병원 등과 대형건물의 부설주차장, 박물관 · 미술관 등 다중이용시설 주차장 등이다. 공회전 제한 지역 내에서의 공회전 허용 시간을 기존 5분에서 2분으로 단축하였으며 대기의 온도가 영상 25℃와 0℃ 이하일 경우에 5분 이내로 제한하였다. 다만, 대기 온도가 영상 30℃ 이상일 경우에는 제한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도록 규정하였다.

권순성 의원　　김경식 의원　　김진석 의원　　조성호 의원

▣ 강원도 주차장 설치 지원 조례안

- 대표발의: 조성호 의원(경제건설위원회·더불어민주당·원주7)
- 공동발의: 권순성 의원(사회문화위원회·더불어민주당·원주6)

조성호 의원　　권순성 의원

시 · 군이 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 사업비의 일부를 도비에서 보조하여 주차장 설치사업의 활성화를 유도하고자 조례안을 발의하였다. 조례안의 지원대상 지역은 시장 · 군수가 실시하는 주차장 수급 실태조사에 따라 주차난이 심각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이나 인구밀도가 높은 지역으로서 주차난이 심각한 지역에 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를 말한다. 구체적으로는 주차장 수급 실태조사 결과 주차환경개선지구로 지정된 지구 또는 주차장확보율이 70%이하인 구역, 주차장 확보율이 70%이하인 읍·면·동, 기존 주차장을 지하 또는 지상으로 입체화하여 주차 면을 확대하는 사업, 학교운동장, 공원부지 등 공공시설 지하주차장 설치사업, 노후주택 매입 등 자투리 주차장 설치사업 등이다. 사업별 보조금의 지원은 총사업비의 30%이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 강원도 노동기본 조례안

■ 대표발의: 허소영 의원(기획행정위원회·더불어민주당·춘천5)
■ 공동발의: 박인균 의원(경제건설위원회·더불어민주당·강릉2)
김혁동 의원(교육위원회·더불어민주당·태백2)
안미모 의원(기획행정위원회·더불어민주당·비례)

강원도 노동자의 권리 보호를 도모하기 위한 조례안을 발의하였다. 조례안은 노동자가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노동하고, 적정한 임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지킬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도지사의 책무로 규정하는 한편 비정규직, 저임금 노동자, 외국인 노동자, 노동청소년 등 취약노동자를 비롯한 일반 노동자의 권리 보호 및 증진을 위한 노동정책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강원도 노동자 권익보호 위원회를 두어 노동자의 권리 및 이익에 영향을 미치는 법규나 정책에 대한 자문을 구하도록 하고 있다.

허소영 의원 박인균 의원 김혁동 의원 안미모 의원

▣ 강원도 청년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대표발의: 조형연 의원(경제건설위원회·더불어민주당·인제)
■ 공동발의: 조성호 의원(경제건설위원회·더불어민주당·원주7)
허소영 의원(기획행정위원회·더불어민주당·춘천5)

강원도 청년의 능동적인 사회참여 기회를 보장하고, 청년의 권익증진과 발전을 지원하기 위해 「강원도 청년 기본 조례」의 전부개정안을 발의하였다. 이번 전부개정에서는 청년의 규정을 만18세 이상 39세 이하의 사람으로 하고 '강원도 청년정책조정위원회'의 설치, '강원도 청년 사업단'의 운영, 청년의 주거안정을 위한 사업, 청년의 사회참여 확대 및 청년문화 확산 등을 위한 청년공간의 설치 및 운영을 규정하고 있다. 특히, 청년단체 또는 청년정책의 시행에 기여하는 단체 · 기관 등에 행정적 ·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조형연 의원 조성호 의원 허소영 의원

▣ 강원도교육청 국어 바르게 쓰기 조례안

■ 대표발의: 윤석훈 의원(교육위원회·더불어민주당·평창1)

강원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교원, 교육공무직원 및 강원도 내 학생의 올바른 국어사용 환경 조성 및 교육을 통해 국어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조례안을 발의하였다. 강원도교육청의 공문서 등을 어문 규범에 맞춰 쉽고 올바르게 써서 도민에게 본보기가 되도록 노력하고, 학생들이 국어 문화를 지키고 발전시킬 수 있는 시책을 세우고 추진할 것 등을 교육감의 책무로 규정하고 있다.

“어문규범”이란 「국어기본법」에 따른 한글 맞춤법, 표준어 규정, 표준 발음법, 외래어 표기법,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 등 국어 사용에 필요한 규범을 말한다. 조례안에서는 교육청의 국어사용 시책의 기본 방향과 추진 목표에 관한 사항 및 국어교육 및 국어사용 환경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된 국어교육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그 밖에 국어책임관의 지정, 공문서 등의 작성, 정책 등의 이름, 지역말 지키기, 교육 및 예산 지원사항 등을 포함하고 있다

▣ 강원도교육청 교육·학예에 관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 대표발의: 허소영 의원(기획행정위원회·더불어민주당·춘천5)

■ 공동발의: 박인균 의원(경제건설위원회·더불어민주당·강릉2)
김혁동 의원(교육위원회·더불어민주당·태백2)

강원도교육청 교육·학예에 관한 조례 일괄정비를 통해 자치법규 접근성을 개선하고, 강원도교육청 소속 직원 및 시민의 권익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강원도교육청 교육·학예에 관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을 발의하였다. 이번 일괄개정을 통해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은 「강원도교육감 소속 교육공무직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 “교육공무직의 안정적인 근로와”를 “교육공무직의 안정적인 노동”으로 개정하고, 「강원도교육감 소속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 제2조제2호 “장애인공무원 중 근로 능력”을 “장애공무원중 노동 능력”으로 개정하며, 「강원도 교육청 노동인권교육 활성화 지원 조례」 2조제2호 “노동인권교육이란 안전하게 일할 권리, 근로조건에”를 “노동인권교육이란 안전하게 일할 권리, 노동조건”으로 개정하는 것이다.

허소영 의원

박인균 의원

김혁동 의원

▣ 강원도교육청 초등학생 생존수영교육 지원 조례안

■ 대표발의: 심영미 의원(사회문화위원회·미래통합당·비례)

■ 공동발의: 최종희 의원(교육위원회·미래통합당·비례), 박상수 의원(경제건설위원회·미래통합당·삼척2), 심상화 의원(기획행정위원회·미래통합당·동해1), 안미모 의원(기획행정위원회·더불어민주당·비례), 이병헌 의원(교육위원회·더불어민주당·원주2), 윤지영 의원(사회문화위원회·더불어민주당·춘천2), 김준섭 의원(교육위원회·더불어민주당·속초2)

강원도 초등학생이 수상(水上) 및 수중(水中) 위기상황 대처능력을 가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조례안을 발의하였다. “생존수영교육”이란 수상 및 수중에서의 위기상황 발생시 자신의 생명을 보호할 수 있는 수영 기능을 익히는 교육을 말한다. 조례안에서는 강원도교육감이 초등학생의 생존수영교육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세울 것과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교육 추진을 위하여 생존수영교육 지원계획을 수립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심영미 의원

최종희 의원

박상수 의원

심상화 의원

안미모 의원

이병헌 의원

윤지영 의원

김준섭 의원